



보도참고자료



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 분야 관련 사업 내용

-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 분야 관련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.
- 교육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긴급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연령 이하 아동 양육 가정, 방과후 강사, 학원 등에 신속하게 안내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, 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1 [초등·중학생 이하] 아동특별돌봄 지원사업 (복지부)

- (예산규모) '20년 기정예산 1조 539억 원
→ '20년 4차 추경으로 1조 2,709억 원 증액 (최종예산 2조 3,248억 원)
- (지원내용)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에 따른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학생 연령 이하 아동 양육가구에 대해 지원금 지원
 - 초등학생 이하 연령 아동 1인당 20만 원, 중학생 연령 아동 1인당 15만 원 현금(계좌) 지급
- (대상) 670만 명* / 중학생 이하 아동('20.9월** 기준, '05.1.~'20.9. 출생아)
 - * ▲아동수당 지급대상(만7세 미만) 262만 명 + ▲초·중학생 연령** 418만 명
 - ▲초등1학년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중복아동('13.10~'13.12월 생) 10만 명(복지부에서 제외)
- (지원시기 및 절차)
 - ①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('14.1.~'20.9. 출생아, 단 초등학생 제외)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('20.9월 기준)에 지급(9월중)
 - ② 초등학교 재학생(초1~6학년)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(K에듀파인)을

통해 추석 전 지급(계좌 검증 절차 등 사전 진행)

- ③ 중학교 재학생(중1~3학년)은 계좌 검증 절차 등을 거친 후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(K에듀파인)을 통해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
- ④ 학교 밖 아동('05.1~'13.12월 출생아)은 아동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방문 신청을 받아 지급(10월중)
 - ※ 보도·홍보 등을 통해 안내 → (학부모)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접수(9.28~10.16, 공휴일 제외) → (교육지원청) 증빙서류 확인 및 지급(10월 중)

2 [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고프리랜서]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 (고용부)

- (예산규모) '20년 기정예산 2조 221억 원
→ '20년 4차 추경으로 5,560억 원 증액 (최종예산 2조 5,781억 원)
- (지원내용)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(이하 특고) 및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
 - 기 수급자(50만 명, 추가심사 없음)에게 추가로 50만 원 지급
 - 신규 신청자(20만 명, 심사를 거쳐 선정)에게 월 50만 원씩 150만 원 지급
- (지원대상) '19.12월 ~ '20.1월에 근로소득이 생긴 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
 - 지원 대상인 특고·프리랜서에 방과후(학교) 강사, 학습지 교사, 스포츠 강사 등이 포함되며,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대상은 약 5~6만 명으로 추산
 - ※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는 116,760명('19년 기준)이며, 이들은 통상 두 개 이상의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중복 집계되므로 지원 대상은 약 5~6만여 명으로 추산
- (지원시기 및 절차)
 - (1차 지원금 수령자) 계좌번호 등 사전확인(~9.23) → (추석 前)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완료
 - (신규 신청자) 10.12~10.23(잠정*) 지원금 전용 누리집(홈페이지)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→ 신속 심사를 거쳐 가급적 11월 內 일괄 지급
 - ※ 기 수급자·신규수급자의 지원금 신청 기간, 지원 요건,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

3 [학원 등] 소상공인 성장지원 (중기부)

- (예산규모) '20년 기정예산 3,618억 원
→ '20년 4차 추경으로 3조 3,072억 원 증액 (최종예산 3조 6,690억 원)
 - (지원내용)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 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“소상공인 새희망자금” 지급
 - (지원대상 및 지급액)
 - (일반업종)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 원
 - (특별피해업종) 집합금지*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(매출감소 여부 무관) 200만 원

* 8.16일 이후 집합금지된 전국 대형학원(433개소) 및 수도권 중·소형학원(41,443개소)
※ (소상공인) 학원등 교육서비스업은 매출 10억 원 이하, 상시근로자 5인 미만
 - (지원시기 및 절차) 추경 통과 직후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 및 은행·카드사에 온라인 접수창구를 개설하고, 추석 전부터 지급 개시
 - ※ **별도** (특별 세정지원) 4차 추경예산(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)과는 별개로, 집합금지된 전국 대형학원 및 수도권 중·소형학원에 대해 국세청에서 특별 세정지원* 추진 중임
- * 납세유예, 세무검증완화, 환급금 조기지급 등